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고 제2024-27호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정예지 의원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 (참조: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전화 032-509-7028 / 팩스 032-509-76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소			
· 성명			
· 연락처			

4.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5. 붙임

- 가.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부
- 나. 관련법령 발체사항 1부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란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 그 밖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제4조에 따라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시설주가 이미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주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2.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편의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보행약자의 편익증진 보장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사항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의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